

의안 번호	제3600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4월 0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4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민제안규정」, 「공무원제안규정」에 맞게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- 2025. 1월 조직개편 관련 제안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증원(8명 → 10명)으로 위촉직 위원의 의무 비율 규정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수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아이디어 제안”, “실시제안”, “참여제안”의 정의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나. 정의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(안 제4조)
- 다.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수 증원(15명 → 25명) (안 제9조)
- 라. 규칙 별표에 규정된 부상금 지급 금액을 조례에 명시(안 제17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의 공동제안자에 대해서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함.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